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의안 번호	662
----------	-----

제출년월일 : 2001. 5. 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합리적인 하수도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시장의 공사시행 : 시장은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수 있다.(안 제3조 제1항)
- 나.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안 제9조 제1항)
- 다.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안 제13조 제1항)
- 라. 원인자 부담금 :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설계비,용지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로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안 제18조 제1항)
- 마. 권한의 위임 : 시장은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한다. (안 제24조)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건물 소유자 또는 공공 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 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2장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파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시행 규칙(이하“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작성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신청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사용 승인신청시 함께 제출 할수 있다.

②시장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구조기준에 따라 배수설비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

제7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시장의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하수관거(합류식 관거 및 우수관거:안지름900mm 또는 통수 단면적0.7㎡이상),오수관(안지름 500mm 이상) 간선관거 이하 하수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및 차집관거의 준설비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수선 및 확장 사업비와 수선유지 관리비
5.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6. 기타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기타 비용

제9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하게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 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파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일시사용신고)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11조(하수관거 준설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수 있다.

제12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점용자가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4장 사용료·점용료·부담금

제13조(사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질환경정보전법시행규칙 제8조[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④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폐수량 측정장치를 통하여 하수 및 폐수를 배출할 경우 동 측정장치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 토록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 한다.

제17조(점용료) ① 시장은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 ⑤ 시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 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 자에게 부담시켜야 함.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사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 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
-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 3) 공항의 건설사업
- 4) 관광단지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온천단지,공원집단시설지구 등)
-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 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 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시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 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 기준 (한국산업규격 KS F 1507)에 의한다.

④ 원인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시장이 조례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가산금)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0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23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1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 ③ (적용) 이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소		상하수도과 ☎940-4831
입 안 자	상하수도과장	김 홍 식
	하수도시설담당	장 근 희
	담 당 자	조 응 희

[별표 1]

하수도사용요금표

구 분 업 종		기본요금 (원)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³/월)	m³당 단가 (원)
가 정 용		-	1~10	67
			11~20	77
			21~30	88
			31~40	111
			41~50	130
			51이상	166
업 무 용		-	1~20	91
			21~50	108
			51~100	137
			101~300	171
			301이상	195
영 업 용		-	1~30	130
			31~50	151
			51~100	192
			101~500	242
			501이상	293
욕탕용	1 종	-	1~500	100
			501~700	108
			701~1000	125
			1001이상	143
	2 종	-	1~200	206
			201~300	242
			301~500	281
			501이상	327
산 업 용		-	1m³당	105

수질하수도사용료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시행령 제17조제1항 제1호)
- BOD 또는 COD 값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량계 및 각종계량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 오염부하량 [수질초과농도(mg/ℓ)×시간당 폐수출량(m³)] ×
1/1000×kg단가×1일 조업시간×30일
-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
로서 분으로 표시

하수도점 용료산정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철도,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 ×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³/일) / 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m³/일) × α

※ 총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총사업비 ×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³/일) / 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m³/일) × α

※ 총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α : (1+공공하수도 설치완공후 년평균 도매물가상승률 / 100)ⁿ

n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년수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 공 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	설 치 목 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배제					
	설 치 위 치	파주시 읍,면,동 리 번지(통 반)					
	관 중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간관, 주철관, 기타					
	관 경	Φ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환경부고시 제92-61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 보전 법 제10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	검 사 항 목		1차검사		보완사항	2차검사	비고
			검사일 (. . .)			검사일자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 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 명 (서명 또는인)		성 명 (서명 또는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일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구하							
구비서류 준공검사 신청서, 배수설비 시공도면						수수료	